

의안번호	제 719 호
의 결 연 월 일	2021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
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21년 5월 31일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 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719
----------	-----

제출연월일 : 2021. 5. 31.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의 제정(2015. 3. 5.)과 함께 이 조례의 근거인 「교원자격의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에 관한 규칙」이 폐지되었고, 초등교원 양성기관인 교육대학교에서 초등교원(2급 정교사)을 양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의 초등교사자격부여를 위한 보수교육의 필요성이 없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생략(「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및제4호)
- 2) 규제심사: 제외대상
- 3) 부패영향평가: 제외대상
- 4) 성별영향분석평가: 제외대상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
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교원자격의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3. 5] [교육부령 제57호, 2015. 3. 5, 타법폐지]

「교원자격의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57호, 2015. 3. 5.>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생략
2. 「교원자격의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에 관한 규칙」
- 3.부터 9.까지 생략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1. 3. 1] [교육부령 제228호, 2021. 2. 8, 일부개정]

제11조(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와 법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기준 중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 2. 8.>

1. 초등학교 교사과정: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
2. 특수학교 교사과정: 특수학교 정교사(1급 또는 2급)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
3. 특수학교 관리자과정: 특수학교 교장 또는 교감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

제12조(보수교육 담당기관) 보수교육은 교육감이 시행하되, 교육기관·교원연수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한다.

제13조(보수교육 대상자) 보수교육 대상자는 법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제14조(보수교육과정) ① 보수교육과정은 교육감이 정하며, 보수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교육과목 또는 교육영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5조제1항 단서, 제2항 단서 또는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보수교육과정에서는 별표 1의 교육과목 또는 교육영역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보수교육시간) ① 초등학교 교사과정의 보수교육시간은 336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중등학교 교육경력이 1년 이상인 보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보수교육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특수학교 교사과정의 보수교육시간은 336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한다) 교육경력이 1년 이상인 보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보수교육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특수학교 관리자과정의 보수교육시간은 18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보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보수교육시간은 60시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수교육시간은 각각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보수교육 성적의 산출 및 수수료 등) ① 보수교육 성적은 보수교육 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하며,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보수교육의 수수료자로 한다.

② 보수교육 담당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보수교육 수수료자의 명단을 보수교육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수강료) ① 제13조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수강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는 보수교육에 필요한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제18조(보수교육 경비의 지급) 보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감이 보수교육 담당기관의 장에게 지급한다.

제19조(교육비 등의 지급)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속 교원(교육전문직원을 포함한다)에게 보수교육에 필요한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및 실비 변상) 보수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에게는 보수교육 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원인사과		
입안자	관·과장	교원인사과장 장학관 이원익
	팀장	초등인사팀 장학관 김명섭
	담당자	지방교육행정주사보 김미경(043-290-2636)